■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①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123456 - 1234567
	전자우편주소 123@kocea.or.kr	전화번호 02) 1234 - 5678	휴대전화번호 010 - 1234 - 5678
	②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소속회사	③ 회사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 기 술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11-11-11111(111111-2111111)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38		④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건축사사무소(성동구-건축사사무소-106)
	⑤ 입사일 2013. 12. 01	⑥ 퇴사일 2015. 12. 31	전화번호 02) 3416 - 9500

기술경력

연번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직무분야	⑪ 전문분야	⑫ 공사종류	⑬ 담당업무	⑭ 직위	⑮ 책임정도	⑯ 공법	
	⑰ 공사(용역)개요(70자이내 공란포함)				⑱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⑲ 착공일	⑳ 준공일(예정일)
	2013.12.01 ~ 2014.05.31		부천 3차 00아파트 신축공사				한국자산신탁(주)	
	건축	건축시공	공동주택(아파트)	감리(주택법)	부장	총괄감리원		
	☞ 감리원배치계획서 등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책임정도 '총괄감리원'이 인정되며 감리원배치계획서 등에 확인된 경우에 한해 ⑰ ~ ⑳란 작성							
	2015.06.01 ~ 2015.12.31		김포시 구례지구 C1-6BL 오피스텔 신축공사				국제자산신탁(주)	
	건축	건축시공	일반업무시설	감리(건축법)	부장	상주(건축사보)기술자		
	☞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등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책임정도 '상주(건축사보기술자)'가 인정되며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등에 확인된 경우에 한해 ⑰ ~ ⑳란 작성							

※ ⑰ 공사(용역)개요, ⑱ 공사(용역)금액, ⑲ 착공일 및 ⑳ 준공일(예정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2017 년 7 월 30 일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자나 인·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⑰⑱⑲⑳란은 의무 신고사항은 아니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건설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4. 대리인 신고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